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0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-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누58065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변호사 ○○○
피고, 피항소인	○○○시장
제 1 심 판 결	의정부지방법원 2022. 8. 23. 선고 2021구합10656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4. 28.
판 결 선 고	2023. 6. 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0. 12. 9. 원고에게 한 취득세 33,818,750원, 교육세 2,681,850원,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0,347,350원, 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820,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[1)]

1) 원고는 청구취지에 각 부과처분일을 '2020. 12. 11.'이라 기재하였으나, 을 제1호증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06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'2. 추가판단'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"이후 원고가"부터 제20행 "송달되었다."까지 부분을 "피고는 원고의 전입주소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원고가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, 원고가 2019. 6. 17.자로 피고에게 제출한 '○○○시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수령하는 행위를 변호사 ○○○에게 위임한다'는 내용의 위임장에 따라 위 변호사의 주소지로 위 납부통지서를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, 이는 2020. 12. 21.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다."로 고쳐 쓰고, 마지막 행에 "을 제4호증"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 "달리 N"부터 제7면 제1행 "있을 뿐이다)."까지 부분을 "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N을 B의 실제 대표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, 갑 제14호증(2011. 7. 18.자 차용증)은 N이 차용인,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N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N이 원고에게 기존의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해주었다는 갑 제10호증의 2(2010. 1. 25.자 채권양도통지), 제10호증의 3(2010. 4. 26.자 합의이행각서)은 위 차용증보다 1년 이상 먼저 작성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 주장과는 맞지

수 있는 각 부과처분일은 2020. 12. 9.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표시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06

않는다."로 고쳐 쓴다.

2. 추가판단

원고는, N과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형식적으로 B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.

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바, 갑 제16호증(N의 진술서)은 N이 B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처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B의 주식을 원고에게 맡겼는데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서,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설령 원고를 양도담보권자라고 보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고,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11-06

판사 ○○○